####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

[시행 2017. 5. 1.] [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16-71호, 2016. 11. 16., 일부개정]

서울지방항공청(공항시설과), 032-740-2359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『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』에 따라 저소음운항 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공항소음"이라 함은 공항에 이륙·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.
- 2. "소음대책지역"이라 함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방지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·고시한 소음 영향도 75(단위: WECPNL) 이상의 지역을 말한다.
- 3. "ICAO NADP 1 "이라 함은 이륙 시 활주로말단으로부터 인접한 소음민감지역의 소음감소를 목적으로 ICAO 가 제정한 항공기 이륙절차를 말한다.
- **X NADP** (Noise Abatement Departure Procedures)
  - 4. "ICAO NADP 2 "이라 함은 이륙 시 활주로로 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소음민감지역의 소음감소를 목적으로 ICAO가 제정한 항공기 이륙절차를 말한다.
  - 5. "POM" 이라 함은 조종사의 운항절차를 명시한 매뉴얼을 말한다.
  - 6. "ENGINE RUN-UP" 이라 함은 항공기 엔진의 성능, 각 계통 또는 부분품의 기능점검을 위하여 ENGINE 을 작동 시킬 때를 말한다.
  - 7. "AIP" 이라함은 항공정보간행물을 말한다.
  - 8. "SID" 이라함은 표준계기이륙절차를 말한다.
  - 9. "ICAO" 이라함은 국제민간항공기구를 말한다.
  - **제3조(저소음 운항 절차)** 김포국제공항의 저소음 운항 절차는 심야비행 통제시간운용, 이륙절차, 착륙절차, 시계비행절차, 착륙 후 역추진장치 사용절차 및 ENGINE RUN-UP 절차로 분류하여 적용한다. 저소음 운항절차는 〈별표 1〉과 같다.
  - **제4조(소음 상시 측정)** ① 공항시설관리자는 소음대책지역의 소음피해 감소를 위하여 공항주변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고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(常時) 측정하여야 한다.
    -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을 상시 측정한 결과를 서울 지방항공청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.
    - 1. 매월 측정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통지
    - 2.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월별 측정값의 변화 원인이 반영된 분석자료 통지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3. 매년 1월말까지 지난 해의 소음 자동측정망 운영 및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통지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는 해당지역주민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한다.
- 제5조(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·고시) ① 공항시설관리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, 범위, 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누구든 그 계획 및 도면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한 경우 또한 같다.
- 제6조(소음 측정장치의 설치·관리) ① 공항시설관리자는 소음측정장치의 설치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
  -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소음피해방지를 위하여 항공사 또는 거주민의 요청이 있을시,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소음측정장치의 이동 또는 추가설치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제7조(적용 소음기준·위반소음기준) ① 적용소음기준은 ICAO 권고기준을 85.9dB(A)로 환산하여 각 고정측정국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소음도로서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은〈별표2〉와 같다.
  - ② 김포국제공항을 이륙하는 항공기의 소음이 각 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위반으로 간주한다.
- 제8조(소음측정장치) 소음측정방법은 김포국제공항주변에 설치된 17개 고정소음측정망을 통하여 측정하며, 그 위치 및 지리정보는 (별표3)과 같다.
- 제9조(소음부담금의 부과·징수 기준) 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은 항공기가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·고시한 공항으로 착륙할 때 부과한다.
  - ② 제1항의 소음부담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부과·징수한다.
  - 1. 제1등급·제2등급·제3등급 : 해당 항공기 착륙료(부가가치세를 제외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
  - 2. 제4등급: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5에 해당 하는 금액
  - 3. 제5등급: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 하는 금액
  - 4. 제6등급 :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5에 해당 하는 금액
  - ③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2항에 따라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유 자와 소음기준을 위반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배를 추가 소음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한다.
  - ④ 항공기기종별 소음등급은 공항소음방지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(항 공기기종별 소음등급의 고시- 별표4)를 동일 적용한다.
- **제10조(동일항공기의 중복 위반)** ① 동일 항공기가 이륙 시 각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2개소 이상 중복하여 위반한 경우 1회로 간주하여 소음부담금을 부과한다.
- 제11조(소음기준 위반 항공기에 대한 통보·이의제기 절차) ① 공항시설관리자는 매달 15일까지 전월의 소음기준위 반항공기에 대한 내용을 해당 항공사 또는 항공기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항공사 또는 항공기 운영자는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, 통보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.
- ③ 공항시설관리자는 항공사의 소음기준 위반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항공사 또는 항공기 운영자와 협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.
- 제12조(소음부담금 징수 절차) ① 공항시설관리자는 매달 5일까지 전월의 항공기 이착륙 자료를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김포항공관리사무소로 보고(소음부담금 시스템으로 갈음)하여야 하며, 이착륙 자료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 김포항공관리사무소는 이착륙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해당항공사에 소음부담금 징수를 위한 고지서를 발급하여 항공사 또는 항공기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③ 김포항공관리사무소는 소음부담금 징수현황을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매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한다.
- 제13조(소음부담금의 부과·징수방법) 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소음부담금 및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추가소음 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당해 항공기가 착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이내
  - 2. 소음기준위반으로 인한 추가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위반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내
  - ② 소음부담금의 납부시 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시장평균환율(미화의 외국환은행간 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환율)을 적용하되 환율적용기준일은 당해 항공기의 착륙일로 한다.
- 제14조(소음 유발항공기의 임시운항 및 운항허가) ① 항공기의 성능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"김포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"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는 운항 개시 3일전까지 서울지방항공청에 신고하여 임시운항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.(단, 정기 및 부정기 항공사의 항공기는 임시운항허가 대상에서 제외)
- **제15조(김포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적용 예외 항공기)** 김포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.
  - 1. 군, 경찰, 소방항공기(회전익 포함)
  - 2.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
  - 3. 비상상황(별표1)등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항공기

#### 부칙 <제2016-71호,2016.11.16.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2017.4.30까지 시험운항을 거쳐 2017.5.1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경과조치) 시행일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## 〈별표1〉 저소음 운항 절차

김포국제공항의 저소음 운항 절차는 심야비행통제시간운용, 이륙절차, 착륙절차, 시계비행절차, 착륙 후 역추진장치 사용절차 및 ENGINE RUN-UP 절차로 분류 하여 적용한다.

#### 1. 김포국제공항 심야비행통제시간 운영

- ① 공항지역 주민의 소음피해방지를 위해 아래의 비상상황 등을 제외한 모든 항 공기의 김포국제공항 이·착륙을 금지하는 심야비행통제시간(23시~익일 06시) 을 운영한다.(단, 훈련항공기에 대한 심야비행통제시간은 이륙 18시~익일 06 시, 착륙 20시~익일 06시로 한다.)
  - 1. 비상상황
    - 가) 엔진의 화재 등 비상상태하의 항공기
  - 나) 긴급환자를 수송하는 항공기
  - 다) 태풍 및 강설 대피를 위하여 김포공항으로 이 착륙하는 항공기
  - 2. 특수임무 수행
  - 가) 수색 · 구조 항공기
  - 나) 국가목적 업무수행 인가 항공기
- ② 심야비행통제시간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의 지시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.
  - 심야비행통제시간대에는 가급적 인천국제공항을 대체공항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- 2. 다만, 자연재해등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사용이 불가능할 시 또는 상황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의 지시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공항운영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.

#### 2. 김포국제공항 이륙절차

- ① 김포국제공항을 이륙하는 조종사는 인접한 소음 민감 지역의 소음감소를 목적으로 제정된 ICAO NADP 를 적용하되, 기존 AIP에 수립되어 있는 SID 절차 및 회사자체의 지역별 특정절차를 가미하여 이륙한다.
  - 1. NADP 1 은 이륙시 End of Runway 로부터 인접한 소음 민감 지역의 소음감소를 목적으로 제정
  - 2. NADP 2 는 활주로로 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소음 민감 지역의 소음감소 를 목적으로 제정
- ② 자세한 내용은 항공정보간행물(AIP)를 참조한다.

#### 3. 김포국제공항 착륙절차

- ① 김포국제공항을 착륙하는 조종사는 항공정보간행물(AIP)에 고시된 계기비행 절차를 따르되,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음의 절차에 명기된 소 음감소 절차를 따른다.
  - 1. Delayed Flap Setting Procedures 적용

모든 도착항공기는 다음과 같이 Delayed Flap 접근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며, 특별한 이유없이 이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제기 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
### <활주로 14 사용>

- 가) LLZ가 인터셉트된 후, LANDING GEAR Down
- 나) FAF까지 중간단계 FLAP 유지
- 다) FAF지점에서 LANDING FLAP Set, 최종접근속도 유지
  - ※ AIP(RKSS AD 2-14)참조

#### <활주로 32 사용>

- 가) 7ILS/DME(KIP로부터 8DME) 이후, L/G DOWN
- 나) FAF까지 중간단계 FLAP 유지
- 다) FAF지점에서 LANDING FLAP Set, 최종접근속도 유지

#### <예외 적용>

다만, 위에 기술된 절차는 IAF(R/W 32)를 통과하는 항공기나, 다음과 같은 운항조건에서 LLZ를 인터셉트 할 경우, 적용할 필요가 없다.

- 가) 활주로가 눈으로 질퍽(Slush)거리거나, 얼음 또는 다른 물질에 의해 영 향을 받을 경우
- 나) 구름의 Ceiling 이 지상으로부터 500ft 이하 또는 수평시계 가시거리가 1.9NM이하인 경우
- 다) Cross Wind가 Gust를 포함하여 15kts를 초과하는 경우
- 라) Tail Wind가 Gust를 포함하여 5kts를 초과하는 경우
- 마) Wind Shear가 예보 된 경우

### 2. Reduced Power/Drag Technique 적용(권고)

- 가) L/D Weight 및 R/W Length 가 충분하고,
- 나) 활주로 표면이 DRY Condition 이고,
- 다) 접근 시 배풍성분이 없을 때, 기장의 판단에 따라 최종착륙 프랩각 (Final landing flaps setting)을 사용할 수 있다. 최종착륙 프랩각은 항공기의 비행교범(Flight manual)에서 승인된 최저치를 적용한다.
- ② 착륙 후 조종사의 역추진장치의 사용은 해기종 POM 절차를 따른다.
  - 역추진장치는 고속일 때 효과가 좋으므로 접지되면 즉시 사용해야 한다. 다만, 활주로 길이가 충분하고 활주로의 표면상태가 DRY일 때는 소음감소를 위해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IDLE THRUST를 사용할 수 있다.

- 조종사는 역추진장치를 사용 시 해 기종의 역추진장치 제한사항을 준수해 야 한다.
- 3. 조종사는 필요할 때는 Taxi Speed 까지 Idle Reverse 사용이 허용되나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80kts 이하에서 High Reverse Thrust의 사용을 급한다.
- 4. 활주로를 개방할 때는 역추진장치를 원상(Stowed)의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.

#### 4. 시계비행절차

- ① 시계비행상태에서는 NOISE LEVEL을 줄이기 위해서 MINIMUM DRAG/POWER APPROACH를 사용한다.
- ② 시계비행 기상 최저치
  - 1. 지상시계 : 최소 5km(3SM)이상
  - 2. Ceiling: 450m 이상(1.500ft)
- ③ 시계비행장주 : AIP(RKSS AD2-18) 참조
- ④ 시계비행 보고지점: AIP(RKSS AD2-19) 참조
- ⑤ 시계비행 장주고도
  - 1. 회전익 항공기 : 1,000ft
  - 2. 일반 항공기 : 1,000ft
- ⑥ 시계비행절차
  - 1. 시계비행 항공기는 반드시 two-way radio communication장비를 장착하여 야 하며 Class B지역을 출입 시 서울접근관제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.
    - 가) 시계비행보고지점을 경유하여 김포공항관제권내 내에 이착륙 할 경우
    - 나) 김포공항관제권 내를 통과하여 Transit 할 경우
  - 2. 관제기관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또는 기상으로 인한 항공기의 위험요소 가 발생하거나 항공기 안전이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계비행 항 공기는 반드시 K 지점을 2000ft 이상으로 지나야 한다.
  - 3. 항공기는 사용 중인 각 활주로의 비행코스로 비행토록 지시되어진다.

법제知 헬리콥터는 배풍 5kts 이하에서 공항주변 소음감소를 위하여 H3국췙룝당챙보센터

- 드 사용이 권고되며, 교통소통 및 긴급사항 발생시 또는 조종사 요구시 변경할 수 있다.
- 시계보고지점 F와W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관제권 사이의 RADIO 교신 교 체지역이다.
- 6. 가능한 한, 조종사는 인구밀집지역, 병원, 학교주변을 피해 비행하여야 한다.

#### 5. 항공기 ENGINE RUN-UP 절차

- ① 항공기 ENGINE RUN-UP 시는 항공사별로 제반절차를 규정하여 지상사고 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RUN-UP을 억제하여 소음감소 및 효과적인 ENGINE RUN-UP을 도모하여야 한다.
- ② 모든 항공기의 ENGINE RUN-UP은 당해 항공기의 자격보유자가 수행 하여야 하며, 수행자는 사전 승인을 득한 후 ENGINE RUN-UP을 실시 하여야 한다.
- ③ ENGINE RUN-UP 허용지역은 공항당국에서 지정한 곳을 사용한다.
- ④ 기체는 가능한 한 풍향에 정대하도록 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라도 풍속이 10 knot 이상일 때는 풍향에 대하여 ± 30°이내에 위치토록 한다.
- ⑤ ENGINE 시동 전 및 RUN-UP 중에는 지상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며 L.H 및 R.H 양쪽의 ENGINE 을 동시에 RUN-UP 할 시에는 양쪽에 각 1인 이상의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.
- ⑥ ENGINE RUN-UP 중 화재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 의 EMERGENCY PROCEDURE 에 의거 조치한다.
- ⑦ 기타 ENGINE RUN-UP 시의 안전사항은 항공사별 제반절차를 따른다.

# 〈별표2〉 김포국제공항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

측정국 번호	기준 활주로	활주로 표고(m)	ICAO 소음기준 (dB(A))	거리보정 소음 (dB(A))	적용 소음기준 (dB(A))	비고
1	RWY 32L		85.9	-3.5	82.4	
	RWY 32R	13	85.9	-4.7	81.2	
2	RWY 32L		85.9	-2.1	83.8	
	RWY 32R		85.9	-3.8	82.1	
3	RWY 32L		85.9	1.1	87.0	
3	RWY 32R		85.9	0.6	86.5	
4	RWY 32L		85.9	-5.2	80.7	
	RWY 32R		85.9	-5.5	80.4	
5	RWY 32L		85.9	1.7	87.6	
	RWY 32R		85.9	-0.7	85.2	
6	RWY 14L		85.9	1.8	87.7	
7	RWY 14L		85.9	1.3	87.2	
8	RWY 14L		85.9	-2.5	83.4	
9	RWY 14L		85.9	0.9	86.8	
10	RWY 14L	11	85.9	0.2	86.1	
11	RWY 14L		85.9	-3.8	82.1	
12	RWY 14L		85.9	-2.6	83.3	
13	RWY 14L		85.9	-3.1	82.8	
14	RWY 14L		85.9	-5.3	80.6	
1.5	RWY 32L	13	85.9	-3.9	82.0	
15	RWY 32R		85.9	-4.6	81.3	
16	RWY 32L		85.9	-3.3	82.6	
	RWY 32R		85.9	-4.1	81.8	
17	RWY 32L		85.9	-1.8	84.1	
	RWY 32R		85.9	-1.4	84.5	

# 〈별표3〉 김포국제공항 고정측정국별 위치 및 지리정보

번호	ઢા કો લે કો	설치	좌 표		
	설 치 위 치	장소	북 위	동 경	
1	김포시 풍무로 96번길 71 (풍무초등학교)	옥상	37°36′18.72″	126°43′36.54″	
2	김포시 고촌읍 이화남로 181 (이화마을회관)	옥상	37°35′42.24″	126°44″18.48″	
3	김포시 고촌읍 인향로 210번길 34-33 (고촌문화회관)	옥상	37°35′ <b>1</b> 3.38″	126°45′21.12″	
4	김포시 봉화로 69 (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)	옥상	37°37′16.00″	126°42′31.00″	
5	김포시 고 <del>촌</del> 읍 인향로 244번길 34-8 (소준마을)	옥상	37°35′0.54″	126°45′14.16″	
6	양천구 남부순환로30길17 (광영여자고등학교)	옥상	37°32′18.00″	126°49′28.98″	
7	부천시 고강로170번길 19-4 (고강아파트)	옥상	37°31′52.56″	126°49′26.88″	
8	부천시 오정구 역곡로482번길57 (고강초등학교)	옥상	37°31′37.56″	126°49″13.08″	
9	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58길 32 (신원초등학교)	옥상	37°31′46.98″	126°49′46.98″	
10	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 93 (고리울초등학교)	옥상	37°31′38.58″	126°49′38.16″	
11	서울시 양천구 지양로 47 (신월공원)	지상	37°31′4.02″	126°50′0.00″	
12	서울시 양천구 절골8길 33 (신남초등학교)	옥상	37°30′58.98″	126°50′42.00″	
13	서울시 양천구 중앙로29길 109 (신남중학교)	옥상	37°31′12.00″	126°50′54.00″	
14	서울시 구로구 중앙로3길 20 (고척중학교)	옥상	37°30′03.00″	126°51′43.00″	
<b>1</b> 5	김포시 장릉로 56 (길훈아파트)	옥상	37°36′49.00	126°43′08.00″	
16	김포시 양도로56번길 59-25 (양동중학교)	옥상	37°36′17.00″	126°43′49.00″	
17	김포시 고촌읍 태리로190번길 94 (신촌마을)	지상	37°35′38.00″	126°45′02.00″	

## ⟨별표4⟩ 항공기 소음 등급기준

(단위: EPNdB)

항공기	ICAO 조항 (Annex 16)	에기스	기준 소음 최대값+(허용값)				
등급		엔진수	측면소음	착륙소음	상공소음		
6등급	4.4.1	① 3곳의 측정소음값중 5등급보다 높은곳이 없어야 함 ② 각 측정소음값의 합이 5등급보다 10dB이상 낮아야 함 ③ 2곳의 측정소음값이 5등급보다 최소2dB이상 낮아야 함					
5등급	3,4,1	2		105	101		
		3	103		104		
		4			106		
4등급	2,4,2	2		108	104		
		3	106		107		
		4			108		
	3,5,1	2		105+2	101+2		
		3	103+2		104+2		
		4			106+2		
3등급	2,4,1	2	108	108	108		
		3					
		4					
	2,5,1	2		108+3	104+3		
		3	106+3		107+3		
		4			108+3		
2등급	2,4,1 2,5,1	2		108+3	108+3		
		3	108+3				
		4					
1등급	_,	비행기	103	105	106		
	자료를	초과값허용시	103+2	105+2	106+2		
	제출하지	STOL	109	110	108		
	않은 항공기	초과값허용시	109+3	110+3	108+3		
		헬리콥터	106	109	104		

<sup>※</sup> 위의 표는 항공기 소음등급 분류를 위한 기준이며, 항공기별 소음등급은 소음적합증 명에서 명시한 등급으로 결정한다.